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4. 4. .
발의자 :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내·외 헬스케어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, 프랑스, 독일 등 많은 국가가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 완화,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.

국내의 경우,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실제 국가적 보건 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하였음은 물론, 1,4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「보건의료기본법」에 따른 시범사업이라는 임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.

이러한 뚜렷한 한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원활한 비대면진료 활용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대면진료 산업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여 의료 현장의 혼란마저 야기하고 있음.

그 결과, 국민의 의료권익의 증진과 비대면진료 산업 발전, 국내 의료 시장의 질적 혁신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, 이를 위한

정보의 관리·감독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각 계에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,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협진 개념을 도입하고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,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 (안 제17조 및 제17조의2 개정, 제34조의2 신설 등)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직접 진찰”을 “직접 진찰(제3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를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2제1항 중 “직접 진찰”을 “직접 진찰(제3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를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4조의 제목 “(원격의료)”를 “(비대면협진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”를 “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 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”으로, “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수을 지원하는 원격진료(이하 ”원격진료“라 한다)를 ”의료인과 의료지식·기술·자문을 주고받는 협의진료(이하 ”비대면협진“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“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원격의료를”을 각각 “비대면협진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원격의료”를 “비대면협진”으로 한다.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비대면진료)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(이하 “의료인”이라 한다)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컴퓨터·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

하여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, 진단, 상담 및 처방(이하 “비대면진료”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료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**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** 비대면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.

1. 진단에 필요한 환자의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대면한 상태에서 실시할 수 있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환자가 본인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
4. 제3항에 따라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는 경우

③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마약류나 오·남용 우려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처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. 다만,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인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를 요청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특수성과 한계, 비대면진료를 받는 환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

⑥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의 본인확인·진료비 청구 및 수납·기록 관리 및 보존·처방전 전송 등을 위하여 인터넷매체

(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비대면진료시스템”이라 한다)를 활용할 수 있다.

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비대면진료시스템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비대면진료시스템을 제조·공급하는 자,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.

⑧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개설자 또는 약사는 「약사법」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 또는 점포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환자의 의약품 수령 여부 확인(제6항에 따른 비대면진료시스템을 활용한 방법을 포함한다)

2. 의약품의 오염·변질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⑨ 그 밖에 비대면진료의 실시 및 처방전 전송, 의약품 수령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63조제1항 중 “제35조제2항”을 “제34조의2제5항, 제35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90조 중 “제35조제1항 본문”을 “제34조의2제3항, 제35조제1항 본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,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·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·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.</p>	
<p>제17조의2(처방전)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<u>직접 진찰한</u>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[의사나 치과의사가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(이하 “전자처방전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(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지 못하며,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.</p>	<p>제17조의2(처방전)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<u>직접 진찰(제3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를 포함한다)</u>-----</p>

제34조(원격의료) ① 의료인(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만 해당한다)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·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(이하 “원격의료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(이하 “원격지의사”라 한다)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.

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(이하 “현지의사”라 한다)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

제34조(비대면협진) ① -----

----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-----
----- 의료인과 의료지식·기술·자문을 주고받는 협의진료를 할 수 있다(이하 “비대면협진”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비대면협진을-----

-----.

③ 비대면협진을 하는 자(이하 “비대면협진의사”-----

-----.

④ 비대면협진의사의 비대면협진-----

-----.

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 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.

<신 설>

-----.

제34조의2(비대면진료) ① 의료업
에 종사하는 의사·치과의사·
한의사(이하 “의료인”이라 한
다)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
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
에 대하여 컴퓨터·화상통신 등
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건강
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, 진
단, 상담 및 처방(이하 “비대면
진료”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 상태
에 대한 의료적 판단에 따라
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. 다만,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
항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
중단할 수 있다.

1. 진단에 필요한 환자의 구체
적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
는 경우

2. 대면한 상태에서 실시할 수
있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
판단되는 경우

3. 환자가 본인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

4. 제3항에 따라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
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는 경우

③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마약류나 오·남용 우려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처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. 다만,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인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⑤ 의료인은 비대면 진료를 요청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특수성과 한계,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

⑥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의 본인 확인·진료비

청구 및 수납·기록 관리 및 보존·처방전 전송 등을 위하여 인터넷매체(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비대면진료시스템”이라 한다)를 활용할 수 있다.

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비대면진료시스템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비대면진료시스템을 제조·공급하는 자,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.

⑧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개설자 또는 약사는 「약사법」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 또는 점포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환자의 의약품 수령 여부 확인(제6항에 따른 비대면진료시스템을 활용한 방법을 포함한다)

2. 의약품의 오염·변질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⑧ 그 밖에 비대면 진료의 실시 및 처방전 전송, 의약품 수령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63조(시정 명령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, 제16조제2항,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·제3항, 제23조제2항, 제34조제2항, 제35조제2항, 제36조, 제36조의2, 제37조제1항·제2항, 제38조제1항·제2항, 제38조의2,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, 제45조, 제46조, 제47조제1항,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,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, 종합병원·상급종합병원·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·제3조의4제1항·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

향, 제41조, 제42조제1항, 제48조제3항、제4항,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
--	--